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75번
- 제 안 자 : 강동길 의원 (찬성자 15명)
- 제 안 일 : 2019년 8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조사 실행을 현실화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3.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현실화하여 3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3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구체화(안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19.8.19. ~ 8.26.)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강화 및 확대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임.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음.

- 본 조례는 2012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 부족 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본 조례는 종합계획, 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 조차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한계 등이 있었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상담, 학업, 진로, 취업, 자립,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문형식에 맞춰 현행 14개 조항을 16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종합지원계획 중 사업(안 제4조), 상담지원(안 제6조), 학업·진로 지원(안 제7조), 직업체험·취업지원(안 제8조), 자립지원(안 제9조) 등 8개 조항 및 내용을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안 제5조, 현행 제7조, 현행 제8조) 등 3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며, 지원계획(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4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역할(안 제11조) 등을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시설 이용권(안 제15조), 시행규칙(안 제 16조) 등 4개 조항은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현행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수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수정 및 신설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유지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수정 및 신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수정 및 삭제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 삭제	신설	제6조(상담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삭제 후 신설	제7조(학업지원)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삭제 후 신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이동 후 신설	제9조(자립지원)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수정 및 신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수정 및 삭제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유지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유지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신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이동	제15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4조(시행규칙)	유지	제16조(시행규칙)

- 안 제1조는 현행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대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u>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u>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 이는 대안교육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준용하고, 세세한 정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조문의 간명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청소년</u> ”이란 「 <u>청소년 기본법</u>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u>학교 밖 청소년</u> ”이란 다음 각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p>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p>	<p>목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p> <p>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p> <p>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p>
<p>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p>	<p>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p>

-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계획명을 변경(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인식개선, 지원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계획과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그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학교밖청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1)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도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지원계획의 내용 비교 〉

「학교밖청소년법」	본 전부개정조례안
<p>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li> <l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li> <l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li> <l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li> <l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li> <li>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의 실태조사는 현행 매년 시행하던 것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 표본을 통해 특정사항(학교를 나온 원인, 경로, 현재상태 등)에 대해서만 조사함에 따라, 매년 조사결과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며, 상위법상의 실태조사 주기와 맞추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년으로 조사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중복적 실태조사를 피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지원위원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과 서울시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도록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담(안 제6조, 심리, 진로, 가족 등), 학업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재취학, 재입학, 자격취득, 진로탐색 지원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안 제8조), 자립지원(안 제9조, 생활, 문화, 의료, 정서, 경제, 법률 등) 등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6조는 제정시(2012.7.30.)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원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 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제5조제3항)이 신설(2013.10.4.)됨에 따라 조번호만 남고, 조의 내용은 삭제된 상태였음.

- 본 조례가 제정(2012년)된 후 본 조례를 모델로 법령이 제정(2014년)되었고, 본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제정당시 담을 수 없었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